

목록

[별첨1] 학점인정 및 취득에 관한 지침(제정_2022.04.13).....	1
[별첨2] 군경력증명서(예시).....	10

학점인정 및 취득에 관한 지침

제정 2022년 04월 1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의 4(학점인정), 교무규정 제22조의 2(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의거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의 종류 및 취득 절차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학점인정 분야) ①학점인정 분야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국내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7. 대학-국방부 또는 대학-병무청 간 학점인정 협약에 근거한 군복무기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이 있는 경우
8. 재적기간 중 사회봉사 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제1호~제5호에서 취득한 학점(경험)이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③제1항의 제6호는 소속 학과(전공)별로 개설된 “산업체실습”또는 군위탁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④제1항의 제7호와 제8호는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⑤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편입학 처리 및 학점인정 기준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자격 및 절차) 학점 이수를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 ①취득학점 및 성적 처리는 학점 신청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학점인정 신청 학점 수는 학칙 제24조 제3항의 학기별 최대 신청 학점수(최대 24학점)의 제한을 적용받는다.

③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학점인정 가능한 총 학점은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당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1. 대학(수료) 후 본 대학에 입학한 자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20학점까지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3조 제1항 제4호의 학점은 한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취득이 가능하다.
3.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8호까지의 합산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내 취득이 가능하다.

제6조(성적평가) ①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경우 전적 교에서 이수한 성적의 실점수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실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등급별 본 대학 최하 점수를 반영한다.

1.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본 대학 인정 대상 과목의 학점보다 많을 경우 본 대학 개설 학점으로 인정하고, 적을 경우 유사한 두 개 이상의 교과목을 본 대학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교과목을 한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실점수의 평균(소수점 이하 버림)을 반영한다.

②제3조 제1항 제6호는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실습 경험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단, 군위탁 교육 실습의 평가는 학과별 협약 부대의 교육 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1. 산업체 평가 기준

실습기관 지도자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고
근 면 성	출퇴근 시간 및 근태사항 준수 (10점)		
협 조 성	원만한 대인관계와 태도 및 언행 (10점)		
규 율 준 수	규율 준수 및 상사의 지시 등에 대한 순응 정도 (10점)		
직무지식 (기술)	실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 (10점)		
업 무 달 성 도	주어진 업무를 완수한 정도 (10점)		
업 무 신 뢰 도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책임있는 태도 (10점)		
발 전 가 능 성	창의력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10점)		
합계 (70점)			

2. 교과담당교수(지도교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실습보고서 평가 (15점)	순회지도 평가 (15점)	합계 (30점)	비고
점수				

③제3조 제7호~제8호는 군경력증명서 및 VMS실적인증서를 근거로 봉사시간 60시간을 2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합격), F(불합격)로 부여한다.

제7조(학점 심의) ①제3조 제6호~제8호의 경우 학점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점인정에 관한 심의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1. 학점 분야(과목)의 심의 및 지정
2. 학점 분야의 수강신청,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방법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학점 심의 시기는 학기말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 하에 학기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학점 심의는 학칙 제48조에 근거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해당 학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지침 이전에 시행된 학점인정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경과조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시행2022.01.01.] 시행 전에 교육과정이 확정되어, 2022학년도 1학기 이후 개설된 “현장실습”교과목의 학점인정은 본 지침 제3조 제1항 제6호에 준한다.

[표1] 학점 인정 기준표

학점인정 분야 (제3조 제1항 기준)	학점 인정 교과목	학점 인정 신청 서식	증빙서류
제1호 ~ 제5호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	별지 제1호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 관련 서류 일체
제6호	산업체실습	별지 제2호	별지 제3 ~ 5호
	군위탁 관련 교과목	별지 제2호	학과 실습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7호	자유교양(군사회봉사)	별지 제2호	군경력증명서
제8호	자유교양(VMS사회봉사)	별지 제2호	VMS 실적 인증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적대학 학점 인정 신청서

()학년도 ()학기

인 적 사 항	소 속						
	학년/반	() 학년	() 반	학 번			
	성 명			연락처			
학점 인정 신청 내역							
구분	이수 구분	교과목명	강좌코드	학점	실점수	교과목 담당교수 확 인	
학점인정 신청과목						(서명)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인정 신청과목						(서명)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인정 신청과목						(서명)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인정 및 취득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해당과목 실점수 기재)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 덕 대 학 교 총 장 귀하						경 유	학부(과)장

()학년도 ()학기

 대덕대학교
DAEDUK UNIVERSITY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체실습 경력 증명서

인 적 사 항	소 속			
	학년/반	() 학년 () 반	학 번	
	성 명			연락처
내 용				
기간	주당 실습시간	근무처	근무내용	
2022.00.00. ~ 2022.00.00.	40시간			
2022.00.00. ~ 2022.00.00.	30시간			
총 실습시간	120시간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체 명 (직인)				
실습기관 지도자 확인				
성 명	(서명)			
직명(직책)				
연 락 처	042-000-0000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체실습 종합보고서

인 적 사 항	소 속			
	학년/반	() 학년 () 반	학 번	
	성 명		연락처	
실 습 개 요	실습기관명		업종/업태	
	실 습 기 간	2022.00.00. ~ 2022.00.00.	전공 유사성	(지도교수 서명)
	실 습 목 표	*산업체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 및 계획		
실 습 내 용	*실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시 도식, 사진 부착)			
자 기 평 가	*실습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한 결과 및 간단한 소감			

[별지 제5호 서식]

산업체실습 수행평가표

인 적 사 항	소 속			
	학년/반	() 학년 () 반	학 번	
	성 명		연락처	
산업체 평가				
평 가 항 목	구 분	내용	점수	평가자 확인
	근 면 성	출퇴근 시간 및 근태사항 준수 (10점)		(서명)
	협 조 성	원만한 대인관계와 태도 및 언행 (10점)		
	규 율 준 수	규율 준수 및 상사의 지시 등에 대한 순응 정도 (10점)		
	직무지식(기술)	실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 (10점)		
	업 무 달 성 도	주어진 업무를 완수한 정도 (10점)		
	업 무 신 뢰 도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책임있는 태도 (10점)		
	발 전 가 능 성	창의력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10점)		
	소 계(70점)			
평 가 의 견				
대학(지도교수) 평가				
평 가 항 목	구분	점수	평가자 확인	
	실습 보고서 평가 (15점)		(서명)	
	순회지도 평가 (15점)			
소 계(30점)				
평 가 의 견				
평가 합계 (산업체+대학)			_____ 점/100점	

군 경력증명서 (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제 2019-120001 호

발급목적 : 학점인정 신청용

인적사항	군번 17-100001	계급 병장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童)	군사특기 111 101 (소총)	
	전문자격	생년월일 19970723	
복무사항	입대일자 20170616	전역(예정)일자 20190315	
	복무개월 (격오지 및 접적지역 복무개월) 21개월 (12개월)	최종 근무부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3대대	
근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무
	2017.06.17. ~ 2017.07.28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교육생
	2017.07.31. ~ 2017.08.04.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보충요원
	2017.08.07. ~ 2017.12.01.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3대대 1중대 1소대	소총수
	2017.12.04. ~ 2018.06.01.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3대대 1중대 1소대	기관총 부사수
	2018.06.04. ~ 2018.11.02.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3대대 1중대 1소대	부분대장
	2018.11.05. ~ 2019.03.15.	육군본부 제1군사령부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3대대 1중대 1소대	분대장
전투경력	명칭	기간	주요내용
명예로운경력	명칭	기간	주요내용
	AI 방역 지원 ☞ 사회봉사 실습	2017.11.03. ~ 11.29.	전라남도 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원 요원(1일6H×20일)
	평창 동계올림픽지원 ☞ 사회봉사 실습	2018.02.01. ~ 02.2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통역지원 요원(1일6H×20일)
	특급전사(3보병연대)	2018.07.11.	개인전투사격 특급, 정신전력 특급 체력(3km땀걸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특급 측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
	인명 구조 ☞ 사회봉사 실습	2018.08.22.	휴가 중 서울 광진구 행인 ○○○ 호흡곤란 상황 응급구조(동아일보 8.22. 보도)
	태풍'마리아' 복구 지원 ☞ 사회봉사 실습	2018.07.06. ~ 07.13.	전라남도 여수, 보성, 해남 지역 태풍피해 복구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1일6일×7일)
	산불 진화 지원 ☞ 사회봉사 실습	2018.06.21. ~ 22.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내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초동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경기일보 6.22. 보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2018.09.03. ~ 09.14.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 분대장 리더십캠프 18-7기		
	2018.07.09. ~ 07.20.	2군단 보충대	· 그린캠프 18-5기 (의사소통, 사고예방과정)		
	2018.02.01. ~ 02.26.	제7보병사단 3보병연대	· 응급처치요원 양성교육 18-1기		
진급사항	진급일	계급	조기진급 내용		
	2017.12.01.	일병			
	2018.06.01.	상병	연대장 모범용사 표창		
	2018.12.01.	병장	리더십캠프 성적 우수		
상훈사항	수여일	상훈명	공적 내용		
	2018.05.01.	3연대장 개인표창 (5월 모범장병)	· 대대전술훈련 평가시 모범적인 임무수행으로 부대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		
	2018.08.30.	7사단장 개인표창 (8월 모범장병)	· 모범적인 부대생활 뿐만 아니라 휴가간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부대 명예를 크게 고양		
	2019.01.02.	대대장 개인표창 (1월 모범장병)	· 분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 발휘로 소대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급전사로 타의 모범이 됨.		
그 밖의 사항 (군용항공기 비행기록, 봉사 활동 등 각 군 특성을 반영)	구분 (기간)	내 용			
	2018.03.01. ~ 06.30.	· 소외지역 학습지원  사회봉사 실습 (재능기부, 화천교육지원청 연계 지역학생 학습지도, 주1회4H×20주)			
	2018.07.01. ~ 12.30.	· 해외파병, 국제평화유지작전 참가 (레바논, UN Peace Keeping Operation, 분쟁지역 국제협력 및 조정)			
	2017.06.16. ~ 12.31.	· 대대급 야외전술훈련 2회×14일, 유격훈련 1회×6일 (팀워크 향상, 전투의지 배양, 극한상황하 임무완수능력 숙달)			
	2017.06.16. ~ 12.31.	· 인권·성평등교육 4H×2회, 민주시민교육 64H (주간24H, 반기집중40H) (인권·성인지력 향상, 국가안보·민주의식 함양, 11월 정기평가“합격”)			
	2017.06.16. ~ 12.31.	· 체력단련 224H (아침 100H, 일일체력단련 100H, 주간 전투체육 24H) · 11월 정기체력검정 3급			
	2018.01.01. ~ 12.31.	· 대대급 야외전술훈련 2회×14일, 유격훈련 1회×6일 (팀워크 향상, 전투의지 배양, 극한상황하 임무완수능력 숙달)			
	2018.01.01. ~ 12.31.	· 인권·성평등교육 4H×4회, 민주시민교육 128H (주간48H, 반기집중80H) (인권·성인지력 향상, 국가안보·민주의식 함양, 11월 정기평가“우수”)			
	2018.01.01. ~ 12.31.	· 체력단련 448H (아침 200H, 일일체력단련 200H, 주간 전투체육 48H) · 11월 정기체력검정 1급			
	2019.01.01. ~ 03.15.	· 대대급 야외전술훈련 1회×14일 (팀워크 향상, 전투의지 배양, 극한상황하 임무완수능력 숙달)			
	2019.01.01. ~ 03.15.	· 인권·성평등교육 1H×4회, 민주시민교육 12H (주간12H) (인권·성인지력 향상, 국가안보·민주의식 함양)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 경력(복무역량 및 성과)을 증명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육군참모총장		직인			
연락처 : 031-700-0111 (3대대 인사과)		유효기간 : 2019년 12월 31일 까지			